

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 등)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2월 3일
국무조정실장

1. 선발예정인원(1개 직위, 총 1명)

채용구분	인원	주요담당업무	근무예정부서(근무지)
기간제근로자	1명	○ 조세심판청구 관련 사무보조 및 비서	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(세종특별자치시)

※ 휴직자 대체인력

2. 근무조건

- 계약기간 : 채용일('25.2.24. 예정) ~ '26.2.1.
 - ※ 휴직자 대체 인력으로 정규직 전환 제외
- 보 수 :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내부 운영지침에 따름
 - 2025년 국무조정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
 - ※ (기본급) 월 209만원 내외
 - ※ (수당) 초과근무수당, 연가보상비 등
 - ※ (보험)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
 - *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
- 근무지 :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(세종특별자치시 소재)
-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
 - ※ 업무 특성상 기재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가능(수당 별도 지급)

3.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

① 응시자격요건 [최종시험(면접시험) 예정일 기준]

- 「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」 제2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※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준용

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7. 12. 31. 이전 출생한 자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, 최종시험예정일(면접일) 기준 6개월 이내 전역(소집해제) 예정자 포함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 - *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-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(가족 채용 제한)

1. 소속 고위공직자
2.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3.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4.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
② 우대요건 **[원서접수 마감일 기준]**

우대요건(해당자에 한함)	
기간제 근로자 (사무보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개월 이상의 사무보조 경력 보유자(연차별 차등 우대) ○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보유자 (아래 자격증만 인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,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,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,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* '12.1.1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, 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 '11.12.31까지 취득한 자격증은 2급 이상, '12.1.1.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등급 구분 없이 인정

4. 시험방법

①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를 초과한 경우,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

※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, 우대요건 참고

※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,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

② 2차시험 : 면접전형

※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※ (평정요소)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
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'하'로 평정하거나,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'하'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,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

※ "상"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"중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

5. 채용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5.2.3(월)~'25.2.10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, 인사혁신처 나라일터
원서접수	'25.2.3(월)~'25.2.10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채용담당자 (전자우편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5.2.14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면접전형	'25.2.19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지
최종합격자 발표	'25.2.21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

6. 원서접수

○ 접수기간 : '25. 2. 3.(월) ~ '25. 2. 10.(월) 18:00

○ 제출방법 : 관련 서류는 **e-mail로만 접수**

- e-mail: answjddn12@korea.kr

※ 전자우편 접수는 **마감일('25.2.10.) 18:00까지** 도착분에 한함

7. 제출서류 안내

※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**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(모아찍기 금지)**

※ 제출서류 중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**반드시 서명하여 제출**

※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**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**

제출서류	비고
I. 공통사항(필수제출서류)	
1. 응시원서 1부 (별지 1호 서식)	·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,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 · 자필 서명 필수
2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2호 서식)	· A4 2매 이내로 작성(형식·구성 자유) · 자필 서명 필수
3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(별지 4호 서식)	· 자필 서명 필수
4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(별지 5호 서식)	· 자필 서명 필수
5.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(별지 6호 서식)	· 자필 서명 필수
6.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(별지 7호 서식)	· 상단의 '채용기관'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고, '채용대상자' 부분에 응시자의 인적사항 기재 · 하단의 확인사항 체크 후 자필 서명 필수
7. 주민등록초본 1부	·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
8. 가족관계증명서 1부	

II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함)

9. 경력(재직)증명서 1부
(필요시 별지 3호 서식 활용)

-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
- 근무기간(연·월·일)·직위(급)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,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
-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,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
-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
(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)
-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
- ※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,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첨부하여야 함

10. 자격증 사본 1부

- 최종시험(면접시험)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, 국내 자격증만 해당

8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,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근로계약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조세심판원 행정실(☎044-200-17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